

“최저가낙찰제 대안 종합심사낙찰제

중소건설사 공동도급 원천봉쇄

도내 업체 “대기업 유리 수행평가 개선돼야”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가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내 중견·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를 차단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서 따르면 중심제는 당초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온 최저가낙찰제를

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사수행 능력을 비롯해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중심제를 시범사업 방식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심제의 평가방식은 중소기업과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

능력평가 심사에서 점수 손해를 받는 등 공동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중심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철도시설공단,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중심제 특례 운영기준에는 공동수급제 심사시 시공비율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실적과 시공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입찰 참가하는 것보다 불

리하다.

실제 중심제를 적용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1공구 노반건설공사’의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은 4.4%(4개사)에 불과한 반면 비슷한 규모의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울산산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의 경우 공동도급비율은 18.7%(5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의 수행능력을 이점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심제의 문

제로로 지적된다. 사전적심사(PQ)를 1차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로 중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건설업체 차원에서는 2번씩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대형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각 항목별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중심제는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실적규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사 실적이 많은 대형건설사에 맞춰진 제도”라며 “중소건설업체의 실적확보를 위한 기회의 향후 성장에 나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SOC 예산 조기집행 1월 성적은 기대 이하

기재부, 재정 동향 발표

국도부, 연간계획 대비 6.3%
중앙부처 평균에도 못 미쳐
철도공단·도공 등도 1~2%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의 조기 집행을 예고했지만 올해 첫 달에는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SOC 예산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공공기관들이 올해 발주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는 만큼 재정 집행이 점차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국도교통부의 재정 집행 실적은 38조4731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3%를 나타냈다. 이는 중앙부처의 평균 재정 집행률(9.0%)보다 2.7%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난해 말 가장 높은 재정 집행률을 기록한 교육부(12.5%)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입찰철도(22.6%)와 고속철도(14.3%), 광역철도(8.3%) 등 철도 건설 예산이 조기 집행됐지만 고속도로 건설에는 1월도 투입되지 못한 데다 일반국도 건설에도 연간 계획의 0.6%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친 영향이 컸다.

다른 부처에 비해 시설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해수부의 재정 집행률은 4.8%에 머문 가운데 부산항 신항만과 인천신

항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연간 계획 대비 각각 0.3%, 0.1%에 그쳤다.

일반항 건설과 주요항 건설의 재정 집행률도 각각 2.0%, 0.6%에 불과했고 심지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만금신항 개발에 들어간 예산은 전무했다.

중앙부처 평균 재정 집행률을 밑돈 산업부(6.4%)와 환경부(6.5%)도 SOC 예산 집행실적이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쓰인 예산은 연간 계획 대비 0.2%였고 자유무역지역 조성 예산도 정부 공간에 그대로 쌓여 있다.

환경부의 상수도시설 확충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집행률은 각각 1.7%, 0%를 기록했다.

공공기관(6.2%)의 재정 집행 실적도 중앙부처의 연장전선상에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정 집행률은 연간 계획 대비 0.8%에 불과했고 한국도로공사(1.1%), 한국철도시설공단(2.6%), 한국전력공사(4.5%), 한국수력원자력(6.5%),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6.8%) 등도 일제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그나마 한국수자원(15.1%), 한국중부발전(12.5%)이 발전소 건설에 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14.4%)가 3단계 건설사업에 서둘러 예산을 지원한 게 위안거리다.

지난달 SOC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2분기부터는 재정 집행이 대거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예산의 경우 정부가 상반기에 60% 수준을 조기 집행하기로 한 데다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집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계획적인 예산 집행으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범기자 kmp@

아하! 그렇구나

적격심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1. 시간개요

피고 발주기관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정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심사기준에는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감한다”는 특별신인도 평가 항목을 두었다. 원고는 2002. 12. 10.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여 최저가 입찰자로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실, 한편 소의회사는 2001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는 바, 원고의 대표이사 소의인은 2002. 10.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회사의 상호를 상아토건 주식회사에서 소의회사와 동일한 금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소의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2002. 9. 30경 원고의 주주가 전원 변경되었으며, 소의인은 2002. 7. 18. 소의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 이 사건 적격심사 무렵 소의인은 원고와 소의회사 양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발주기관은 국방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별신인도 평가 항목의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 원고가 속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해 0.5점을 감점한 결과 원고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원고에게 부적격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벌점에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규정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적격심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바, 그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가 문제된다.

3. 사인의 검토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적격심사 제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입찰자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한 자에 대하여 감점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특별신인도 항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5항을 유추적용하여,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던 법인의 변경 전 상호를 사용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입찰한 법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던 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별신인도 항목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감점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정당한 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그러나 사실상 낙찰자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인도 감점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영입했다고 하여 그 회사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감점을 하여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입찰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건설업체들로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향후 대표이사를 영입함에 있어서 신인도 감점을 받은 업체의 대표이사를 영입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변호사
(건설 법률상담 전문위원 법무법인 동인)



오늘의 주요 일정

- ▶공정위, 한국중부발전(주) 발주 절연재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견
- ▶산업부, 친환경 에너지 지립성 검토 통해 62개 도시로 민간투자 유치 확대
- ▶기재부,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